

『구미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08년 6월 19일

나. 발 의 자 : 박세채 · 구자근 · 길윤옥 · 김상조
우진석 · 윤서규 · 이갑선 · 정근수
허 복 · 황경환(10명)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6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2008년 6월 30일

제1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박 세 채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통 · 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선에서 헌신, 봉사하는 통 · 리장의 사기를 진작코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장학금지급 대상학력을 「중 · 고등학교」에서 의무교육인 중 학교를 삭제하고 「고등학교」로 조정 (안 제1조)

- 장학생의 자격을 통·리장으로 「2년 이상」 근속한 자의 자녀를 「1년 이상」으로 조정 (안 제2조)
-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수업료가 면제되므로 장학생 선발의 중·고등학교 배정비율 삭제 (안 제4조제2항)

라. 참고사항

- 「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」
- 「구미시 통리장 및 반장임명 등에 관한 규칙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○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

- 통·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장학생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조례안 임

○ 주요 개정내용은

- 안 제1조는 장학금지급 대상 학력을 「중·고등학교」에서 의무교육인 「중학교」를 삭제하여 「고등학교」로 조정하고
- 안 제2조는 장학생의 자격을 통·리장으로 「2년 이상」 근속한 자의 자녀를 「1년 이상」 근속한 자의 자녀로 완화하는 등 선발규정 일부를 개정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 조례안은 일선에서 헌신, 봉사하는 통·리장의 사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되며 타법에 저촉사항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